

의안번호	2218984
의 퇴 인	조지연의원
회 답 일	2026.5.29.
추계번호	26B262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2조의2 (포상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제1항)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2조의2 (포상금)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4조제1항 및 제2항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 제52조의2²⁾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

- 1)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52조의2(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으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2026년 기준 1억 5,000만원임 (참고자료 참조)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포상금으로 395건에 대하여 7,780만원을 지급하였음

[표 1]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건 수	지급금액	지급예산
2023	576	120,700	150,000
2024	690	119,475	150,000
2025	395	77,800	150,0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개정안이 시행되어 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포상금 지급 대상의 규모 및 포상금 지급 액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포상금 지급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현시점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질 다. 법 제35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0만원 이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를 신고한 경우 가. 법 제35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나. 법 제35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다.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처리제품	10만원 이하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자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